



협 회 소 식

제 20 회 산업안전대회 성료

○ '87년 산업안전강조기간을 맞아 '87.7.1 오전 10:00 제 20회 산업안전대회 중앙대회가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현기 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대표, 한국경총 대표, 대한산업보건협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내외귀빈과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다.



○ 노동부는 매년 7월을 산업안전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안전대회를 통하여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고조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동 강조기간중 산업재해

예방세미나 개최, 영세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위생 관리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과 획기적 감소를 꾀하고자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다.

○ 특히 금년도 행사는 지난해 5개도시에서 개최하던 지방대회를 부산, 대구, 광주의 3개도시로 축소 실시하고 지역분산실시로 따르는 경비절감과 노·사의 적극적 참여아래 내실있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당협회 각 지부에서는 동 강조기간중 사업주, 근로자 및 보건관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정된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에 대한 개선지도 계몽을 실시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에 공동노력을 촉구하였다.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 실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이 8.3부터 시작되어 금년 12.31 까지 실시케 된다.

총 229,266,000 원의 국고지원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전국의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중 대상사업장 644개 업체를 노동부로부터 선정받아 당

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공동실시에 들어갔다.

정부는 매년 재해발생 취약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강력하게 지도·감독하며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도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부별	계	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	대 상 지 역 (노동부지방사무소)
총 계	644 개소	44 개소	600 개소	
서울지부	269	33	236	서울중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성남, 춘천, 원주, 영월, 강릉
부산지부	101	-	101	부산중부, 동래, 북부
대구경북지부	172	6	166	대구, 포항, 구미
충남지부	7	1	6	충주, 보령
전북지부	20	-	20	전주, 군산, 이리
전남지부	34	-	34	광주, 여수
경남지부	41	4	37	마산, 창원, 울산

당 협회, 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최근 입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 시점에 즈음하여 당 협회에서는 그동안 산업보건 실무경험을 통하여 도출된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관계기관에 청원키로 하였다.

○ 당 협회는 국민의 다수인 전국 800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중시하고, 이들 기본적권리의 헌법상의 명문화와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의 효율적인

력운영,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산업 안전보건의 발전과 정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의 개정을 청원키로 하였으며,

○ 당 협회에서 청원키로 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 및 개정이유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현 행	개 정 안
제 30 조 (근로의 권리, 의무, 보호, 기회)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제 30 조 (근로의 권리, 의무, 보호, 기회) (3) 근로에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보건의 보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개정이유

현 행	개 정 안
정한다.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개정이유)

- (1)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이 많다.
- (2)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노·사·정 모두의 관심이 부족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는 물론 연구마저 부진한 실정이다.
- (3) 산업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입었고, 불행한 가정을 속출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고 있다.
- (4) 연간 약 15만명이 재해로 부상을 입고 약 5,000명이 불구화되고 있으며, 약 1만명이 직업병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외국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이다. 또한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연간 약 1조 7백 3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5) 노·사문제는 임금, 고용에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새민주공화국에서는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우선하여야 한다.
- (6) 전국 사업장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되도록 현행법에서 정해져 있는 곳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50인 이하의 사업장의 수는 50인 이상보다 많으며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현 행	개 정 안
제 72 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1) 일정한 사업에는 사용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 72 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1) 일정한 사업에는 사용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법인인 산업안전협회와 산업보건협회에 가입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

(개정이유)

- (1) 안전, 보건관리자는 사용주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없는한 사업장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 (2) 현재 많은 사업장에 있어 안전, 보건관리자는 명목상의 임명, 위촉된 사람들로서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3) 안전, 보건관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외국과 같이 전문법인단체의 회원이 되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4) 전문법인단체는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의 원활이 이행되도록 사용주단체 또는 사용주 개인과 절충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입 임무수행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